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9
----------	------

제출일자: 2015. 12. 22.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기준 정비(안 제4조)

- 위원의 구성 기준 변경 :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반영

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52조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1. 30. ~ 12. 16.)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선과제 반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진구청장 (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u>자</u>로 한다. <u>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2인으로 한다.</u></p> <p>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p> <p>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p> <p>5. <u>고문변호사</u></p> <p>6. <u>구의원 1인</u></p> <p>7. <u>구 소속 공무원</u></p> <p>제5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 ·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6. (생략)</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u>각 호의 어느 하나</u>-----</p> <p>-----<u>사람으로</u>-----</p> <p>----. <u><후단 삭제></u></p> <p>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p> <p>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p> <p>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p> <p>제5조(기능)-----</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u></p> <p>7.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새로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관리국 주택과 행정7급 차연주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신 현 식